예 산 총 칙

2024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2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	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	합 계	816,827,921	24,504,838
일반회계		799,878,209	23,996,346
특별회계		16,949,712	508,491
	공기업특별회계	14,414,550	432,437
	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	14,414,550	432,437
	기타특별회계	2,535,162	76,055
	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900,224	27,007
	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1,634,938	49,048

- 제 2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-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"해당없음"으로 한다.
- 제 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- 제 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해당없음"으로 한다.
- 제 6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3,400,000천원으로 한다.
- 제 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50,200,000천원으로 한다.
-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